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 56호)

○ 2018. 12. 12.

○ 행정복지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27. 장옥준의원 외 8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2. 05.

다. 상 정 일 자 : 2018. 12. 12.

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

-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장옥준 의원)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심경석)

1. 제정 배경

- 먼저, 동 조례안은 2014.5.20일 제정되고 2015.11.21일 시행되고 있는 『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,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-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『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』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2,501,112명 중 지체장애인은 1,278,368명(51.1%),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291,24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.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초구의 경우 2018.9.30일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10,736명이며, 이 중 발달장애인은 975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9.1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.
- 『장애인복지법』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. 그러나,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보다 일상생활, 교육,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, 또한 자기결정, 자기권리보장 등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.
-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강북구, 광진구, 강남구, 강동구 등 총 20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2. 주요 내용 검토

1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『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음.

2)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(안 제5조, 제7조)

-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사업,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이는 『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.

3)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(안 제8조)
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,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『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』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않고 해당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방안임.

4)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, 민간위탁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-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『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,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안 제11조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, 정보 제공, 상담 및 홍보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『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제1항 제3호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에 해당되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안은 『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> 현재 타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현황은?

답> 20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있음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10. 체계짜구정리내용 : 없음